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-53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‘12. 9. 27일자 불산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지역의 우체국금융고객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10월 10일

우정사업본부장

## **불산가스누출 피해지역 우체국금융고객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**

**1. 지원대상 : 불산가스 누출 피해지역의 우체국금융고객 중 피해주민**

**2. 지원기간 : ‘12. 10. 10. ~ ‘13. 4. 9.(6개월)**

**3. 지원내용 : 우체국금융 취급수수료 면제**

- 온라인송금 수수료 면제(타행환 제외)
-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

**4. 구비서류**

- 피해지역 우체국장 피해사실 확인서류 또는 구청, 읍·면·동 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